

울산지방법원 2023. 4. 4 선고 2022가단123174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B

피 고 C

변 론 종 결 2023. 3. 21.

판 결 선 고 2023. 4. 4.

주 문

1.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. 12. 16. 체결된 매매계약을 18,513,82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18,513,828원 및 그 중 11,970,447원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.
2. 적용법조 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(공시송달, 불출석)

판사 이동욱

별지